
- 불법 주정차 4대 과제 중점 개선을 위한 -
불법 주정차 위반 시민신고제 운영 지침(개정)

자치경찰단 주차지도과 2014.9.11. 시행, 2014.12.8. 일부개정

제주시 교통행정과 2019.3.20. 일부개정

제주시 교통행정과 2019.3.26. 일부개정

제주시 교통행정과 2019.4.4. 일부개정

제주시 교통행정과 2019.7.8. 일부개정

2019. 7.

목 차

I. 시행개요	_____	1
II. 시민신고	_____	3
III. 과태료 부과	_____	9
IV. 행정사항	_____	10
V. 참고자료	_____	11

주정차 위반 시민신고제 운영 지침(재개정)

I

시행개요

□ 시행근거

- 「도로교통법」 제160조 제3항(과태료)
-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8조(과태료 부과 및 징수 절차 등)
- 「도로교통법」 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 제33조(주차금지의 장소)

□ 신고대상 위반행위

- 도로교통법 제32조 및 제33조에 따른 주·정차 위반 차량

□ 대상지역 및 차량

○ 일반 지역 - 다리 위 신고대상 추가

- 보도(인도) : 연석 등으로 차도/보도가 구분되어 있는 보도(인도)를 침범한 정지상태 차량
- 안전지대 : 안전지대를 침범한 정지 상태 차량
- 다리(교량) : 주차금지 노면 표시가 있는 다리(교량) 위 주차된 차량

○ 4대 중점 개선 분야 - 신고 대상 명확화

- 소화전 : 다음 중 하나 이상에 해당되는 공공소화전에 한함
 - 가. 적색 복선 또는 「소방시설 주정차 금지」 문구가 표시된 구간을 막거나 침범하여 주정차한 경우
 - 나. 주정차 금지구역 내 황색 실선으로 노면 표시된 장소에 주정차 한 경우
- ※ 사진 상 교통안전 표지 및 소화전 등이 명시되어야 함
- 교차로 모퉁이 : 다음 중 하나 이상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함
 - 가. 주정차 금지 규제표지(표지판) 또는 노면 표시(황색 복선)가 설치된 교차로의 가장자리나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의 모퉁이를 침범한 정지상태 차량
 - 나. 주정차 금지구역(도로모퉁이) 내 황색 실선 노면표시된 장소에 주정차 한 경우

- 버스 정류소 : 버스가 진입하기 어렵도록 정류소 표지판이나 노면표시선 및 인근을 침범한 정지 상태 차량

※ 사진 상 노면 표시선 및 버스 승강장 등이 명시되어야 함

- 횡단보도 : 횡단보도 위나 정지선을 침범한 정지 상태 차량

□ 신고대상 운영 시간 및 사진 촬영 간격

- 보도, 소화전, 교차로 모퉁이, 횡단보도 : 24시간, 1분이상 간격
- 버스 정류소 : 06:00 ~ 24:00, 1분이상 간격
- 안전지대, 다리(교량) 위 : 06:00 ~ 24:00, 5분이상 간격

※ 점심시간(11:30~13:30) 단속유예 적용 제외

□ 신고방법

- 생활불편 스마트폰 신고 앱(App) 또는 안전신문고 앱(App)

□ 신고시기

- 피신고자 방어권 보호를 위해 적발한 날로부터 3일 이내 신고

□ 신고서류

- 동일한 위치(방향)에서 전/후 1분·5분 이상 간격을 두고 촬영한 칼라사진 (정지 화상물) 2매 이상 첨부

※ 위반지역과 차량번호가 식별 가능하고, 촬영 시간이 표시되어야 하며, 동영상은 제외함

□ 신고보상

- 없음(직업적인 신고활동으로 인한 폐단 방지)

1. 개념 및 시행근거

○ 시민신고제 개념

- 누구나 주·정차 위반 차량을 신고할 수 있고, 직접 촬영한 사진에 의하여 위반사실을 입증할 수 있으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제도

○ 시민신고제 시행근거 (경찰청 회신 및 법령해석 : 참고자료 2)

- 「도로교통법」 제160조제3항

③ 차가 제5조, 제13조제1항·제3항, 제14조제2항, 제15조제3항(제61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7조제3항, 제23조, 제25조제1항·제2항·제5항, 제27조제1항, 제29조제4항·제5항, 제32조부터 제34조까지, 제39조제4항 또는 제60조제1항을 위반한 사실이 사진, 비디오테이프나 그 밖의 영상기록매체에 의하여 입증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6조제1항에 따른 고용주등에게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도로교통법시행령」 제88조제2항 (주·정차 위반의 경우 증거 관련)

② 시장등은 법 제160조제3항에 따라 법 제32조부터 제34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차의 운전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람이나 직접 운전자나 차를 관리하는 지위에 있는 사람 또는 차의 사용자(이하 "고용주등"이라 한다)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경우에는 주차·정차위반 차에 과태료부과대상차표지를 붙인 후 해당 차를 촬영하거나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로 주차·정차위반 차를 촬영한 사진증거 등의 증거자료를 갖추어 부과하여야 하고, 증거자료는 관련 번호를 부여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 등에 시민이 신고한 증거자료도 포함

2. 신고대상 위반행위

가. 법령상 일반적으로 신고할 수 있는 위반행위

○ 「도로교통법」 제160조제3항에 의하면

- 차가 주·정차 위반 사실이 사진, 비디오테이프나 그 밖의 영상기록매체에 의하여 입증되나 운전자를 확인할 수 없거나 범칙금 통고처분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고용주등에게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

- 따라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위반행위는
 - 모든 주·정차 위반(법 제32조부터 제34조까지)(참고자료 3)이 해당되나
- 다만, 단속공무원에 의한 현장단속이 아니기 때문에 신고할 수 있는 위반행위를 모두 적용할 경우에는 위반여부 판단에 있어서 전문성이 부족하고 주차여건이 열악한 주택가 이면도로에서의 무분별한 보복성 신고로 주민 위화감을 조성할 우려가 있어 신고제 적용대상을 우선 제한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음.

나. 현재 신고대상으로 적용하고자 하는 위반행위 : 주·정차 위반

- 주·정차 위반
 - 도로교통법 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 중 보도, 교차로, 횡단보도, 안전지대, 버스 정류소, 소화전을 포함
 - 도로교통법 제33조(주차금지의 장소) 중 다리 위를 포함

3. 신고대상 위반시간 : 주·정차 위반

- 보도, 소화전, 교차로 모퉁이, 횡단보도 : 24시간, 1분이상 간격
 - 4대 분야 개선을 통한 시민 보행권 확보 및 소화전 인근 긴급 시 진입 공간 확보 등 도로 여건 개선을 위해 24시간 운영하고, 전/후 사진 촬영 간격을 1분으로 설정
- 버스 정류소 : 06:00 ~ 24:00, 1분이상 간격
 - 신고제 운영 시간을 대중교통 노선 운행 시간으로 조정하고, 전/후 사진 촬영 간격은 1분으로 설정
- 안전지대, 다리(교량) : 06:00 ~ 24:00, 5분이상 간격
 - 신고 대상별 운영 시간 차등에 따른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버스 정류소 신고 건과 시간은 동일하게 운영하되 전/후 사진 촬영 간격 5분으로 설정

4. 신고방법

[생활불편신고 앱(App) 및 안전신문고 앱(App) - 행정안전부 제공]

- 생활불편 스마트폰 신고 앱(App) 또는 안전신문고 앱(App) 다운로드 후 앱에 접속하여 안내에 따라 불법주정차 신고
 - ※ 안전신문고 앱(App)은 첫 화면에 불법 주정차 4대 개선 과제 신고란 별도 개설
- 신고 시 주·정차 위반 차량번호와 위반 장소가 명확한 사진을 2장 이상을 첨부하여야 함.
- 사진은 위반사실 입증을 위해 1차 촬영한 사진과, 신고 대상별 간격을 두고 촬영한 정지상태가 확인되는 2차 촬영 사진을 첨부하여야 함(촬영 일시 명시)
- 신고 대상별 사진 촬영 예시
 - 보도(인도) : 사진 촬영 간격 1분



- 안전지대 : 사진 촬영 간격 5분



- 다리(교량) 위 : 사진 촬영 간격 5분



- 소화전 : 사진 촬영 간격 1분



- 교차로 모퉁이 : 사진 촬영 간격 1분



- 버스 정류소 : 사진 촬영 간격 1분



- 횡단보도 : 사진 촬영 간격 1분



5. 신고 시기

가. 관련법상 정하고 있는 신고 시기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9조(과태료 부과 및 제척기간)에 따라 위반행위가 종료된 날로부터 5년 이내에는 과태료 부과를 할 수 없음.
- 이는 과태료 부과권한이 장기간 행사되지 않고 있음에도 부과권한을 소멸시키지 않은 것은 당사자의 법적 안정성을 해할 가능성이 있어 제척기간을 명시한 것임.

나. 시민신고제에서 정하는 신고 시기

- 그러나 시민신고의 경우 5년 이내 신고가 가능하도록 할 경우 자칫 증거력에 대한 논란을 초래하고 당사자의 지위 변경 등으로 인하여 행정처분의 실효성을 담보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 이러한 원칙을 시민신고제에 적용하는 데에는 부적절할 수 있음.
- 따라서, 시민신고제에 있어 신고 시기는 위반사실을 적발한 날로부터 3일 이내 신고하도록 함.

6. 신고처리절차

신고방법	처 리 절 차
스마트폰 앱(App)	앱(App) 다운로드(행정안전부) → 시스템 접속 → 불법주정차 신고 접속 → 신고대상 및 요령 숙지 → (신고계속) → 위반차량 1차 사진촬영 → <u>신고 대상별 간격을 두고 2차 사진촬영</u> → 신고처리 → 신고내용 전송(교통행정과 주차지도팀) → 신고서 검토 → 위반여부 판단 → 과태료 부과 또는 미 부과(처리결과 통보)

가. 생활불편 스마트폰 앱 신고사항 대사 관리

- 생활불편 스마트폰 앱, 안전신문고 앱 시민신고 사항을 주·정차 위반 과태료 처리시스템에 단속자료 입력시 정상적인 자료인지 대사 작업을 하여 부과기준에 적합한 것만 연계
- 신고 자료가 입력되면 신고사진에 대한 정합성을 검토하고 기존 신고 내용과의 상충 여부를 검토하는 대사 작업을 진행
- 시민이 신고내용과 사진을 입력하는 것이므로 신고 내용과 신고 사진에 대한 정합성을 결정하는 대사 작업은 필수

7. 신고사항 처리 특례

가. 타 기관에서 처리해야 할 시민신고 사항

- 부서관리자가 담당업무 처리기관(부서)으로 이송조치

나. 과태료 부과 요건을 미비한 시민신고 사항

- 신고요건을 갖추어 신고하도록 안내하고, 시간의 경과(적발일로부터 3일)로 요건구비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종결처리 통보

1. 부과원칙

가. 신고요건을 갖춘 신고사항

- 신고사항이 명백히 위반사실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별도 현장 확인 절차 없이 과태료 부과

나. 신고요건을 갖추지 않는 신고사항

- 과태료 부과가 불가한 사유를 통보하고 종결처리

2. 부과 우선순위

가. 같은 일시, 장소 및 차량 등 동일 위반사항 신고

- 동일 건에 대한 최초 신고 건에 대해서만 처리
 - 증거 사진 검토 등 대사작업 후 과태료 부과 또는 계도 처리 결정
- 이후 동일 내용 신고 건에 대해서는 처리 결과 안내 후 종결
 - 계도 조치 및 과태료 처분 등 동일 차량 최초 접수 건에 대한 처리 결과 안내

3. 신고방법별 부과방법

가. 스마트폰 앱(App) 신고사항

- 증거 사진 등 신고사항 검토 및 대사작업 거친 후 주·정차 위반 여부를 판단하여 과태료 부과시스템 수동 입력 처리

- 불법 주·정차 4대 중점 개선과제를 반영하여 4.29.(월)부터 개정 운영하여 제도 시행 중에 있으나,
- 타 시도 운영상황 분석을 거쳐 신고 대상 및 모호한 과태료 부과 기준을 보다 명확하게 운영 초기에 개선하여 제도의 성공적인 온전한 정착 도모
- 2019.7.9.~7.28.(20일간) 행정예고 거친 후 의견 접수 시 반영 검토하여 2019.8.1.일부터 본 개정 지침을 적용하여 제도 운영 추진

□ 시민신고제 관련 주요 용어정의

1. 주차 (도로교통법 제2조제24호)

- “주차”라 함은 운전자가 승객을 기다리거나 화물을 싣거나 고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차를 계속하여 정지 상태에 두는 것 또는 운전자가 차로부터 떠나서 즉시 그 차를 운전할 수 없는 상태에 두는 것을 말한다.
(주차금지 : 5분 이내 정차 가능)

2. 정차 (도로교통법 제2조제25호)

- “정차”라 함은 운전자가 5분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차를 정지시키는 것으로서 주차 외의 정지상태를 말한다. (정차금지 : 정지자체 불가)

3. 보도 (도로교통법 제2조제10호)

- “보도”라 함은 연적선, 안전표지나 그와 비슷한 공작물로써 경계를 표시하여 보행자(유모차 및 안전행정부령이 정하는 보행보조용 의자차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통행에 사용하도록 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4. 횡단보도 (도로교통법 제2조제12호)

- “횡단보도”라 함은 보행자가 도로를 횡단할 수 있도록 안전표지로써 표시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5. 안전지대 (도로교통법 제2조제14호)

- “안전지대”란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나 통행하는 차마의 안전을 위하여 안전표지나 이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표시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 경찰청 회신 및 법령해석 내용(서울시)

1. 도로교통법 개정 협조 요청에 대한 회신

(교통안전담당관-4122, '12.08.17.)

가. 건의사항

- 불법 주·정차 위반에 대한 민간인 확인 신고제도 도입

나. 회신내용

- 현행 「도로교통법」 제160조제3항에 따라 주·정차 위반한 사실이 사진, 비디오테이프나 그 밖의 영상기록매체에 의하여 입증된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므로
- 누구나 주·정차 위반차량을 신고할 수 있고, 영상기록매체에 의해 그 위반 사실을 입증할 수 있으면 과태료 처분이 가능함.

2. 도로교통법 해석 요청에 대한 회신

(교통안전담당관-6346, '12.12.24.)

가. 질의요지

- 시장 등은 「도로교통법」 제32조부터 제34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 행정청이 아닌 일반인이 제출한 영상기록매체에 근거하여 법 제160조 제3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가 가능한지 여부

나. 관련규정

- 도로교통법
 - 제4조의2(무인 교통단속용 장비의 설치 및 관리)
 - 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
 - 제33조(주차금지의 장소)
 - 제34조(정차 또는 주차의 방법 및 시간의 제한)
 - 제160조(과태료)
 - 제161조(과태료의 부과·징수)

○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7조(권한의 위임에 따른 주차단속의 특례 등)

제87조의2(도지사의 주차단속의 특례)

제88조(과태료 부과 및 징수 절차 등)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45조(단속재장 등) ③ 영 제88조제2항에 다른 과태료 부과대상차 표지는 별지 제158호 서식에 따른다.

다. 검토내용

○ 「도로교통법」 제160조제3항에 따라 단속 공무원이 아닌 일반인이 제출한 영상기록매체에 의해 과태료 부과가 가능한지 여부

- 「도로교통법」 제160조제3항에 따르면 “차가 제5조, 제32조부터 제34조 등을 위반한 사실이 사진, 비디오테이프나 그 밖의 영상기록매체에 의하여 입증되나, 위반행위를 한 운전자를 확인할 수 없어 같은법 제143조제1항에 따른 고지서를 발급할 수 없는 경우나 같은법 제163조에 따라 범칙금 통고처분을 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 때에는” 같은법 제56조제1항에 의한 ‘고용주등’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
- 「도로교통법」 및 같은법 시행령·시행규칙은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명문규정(법 제4조의2)을 두고 있는 것 이외에 ‘사진, 비디오테이프나 그 밖의 영상기록매체’의 구체적인 의미나 촬영방식 및 절차, 한계 등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음.
- 따라서, 「도로교통법」 제160조에 의하여 단속 공무원이 아닌 일반인이 제출한 영상기록매체에 의하더라도 도로교통법 위반 사실의 입증이 충분하면 이를 근거로 과태료 부과가 가능할 것임.
- 다만, 과태료 부과권자인 시장 등은 일반인이 제출한 영상기록매체와 함께 여러 가지 추가 증거 및 위반행위시의 구체적인 정황 등을 보완·종합하여 과태료 부과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임.

-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면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8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대상차 표지를 부착한 증거자료가 있어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 「도로교통법」 제88조에 따른 과태료 주정차 관련 금지행위 위반 과태료(법 제32조부터 제34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와 관련하여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8조제2항은 시장 등이 해당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때에는 과태료 부과대상차 표지를 붙인 후 그 표지가 붙은 차를 촬영한 사진증거 또는 무인단속장비에 의한 사진증거 “등”의 충분한 증거자료를 갖추고, 증거자료에 관련번호를 부여하여 보존하도록 하는 의무를 두고 있음.
 - 동 규정상 과태료 부과대상차 표지를 붙인 후 그 표지가 붙은 차를 촬영한 사진증거 또는 무인단속장비에 의한 사진증거 등은 과태료 부과를 위한 증거자료의 예시에 해당하므로 일반인이 제출한 영상기록매체에 역시 증거자료가 될 수 있음.
 - 한편, 같은 법 시행령 제87조, 제87조의2와 종합해 보면, 시장 등이 직접 단속한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대상차 표지를 붙인 후 그 표지가 붙은 차를 촬영한 사진증거가 필요하나, 일반인이 제출한 영상기록매체의 경우에는 이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반드시 과태료 부과대상차 표지를 부착한 증거자료가 있어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것은 아님.
 - 다만, 과태료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증거자료를 갖추도록 요구하고 있으므로 일반인이 제출한 영상기록매체만으로 곧바로 과태료를 부과하기 보다는 과태료 부과권자인 시장 등은 여러 가지 추가 증거 및 위반행위시의 구체적인 정황 등을 보완·종합하여 과태료 부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임.

□ 주정차 위반 관련 규정

1. 정차 또는 주차금지 위반

근거법령	본 문
도로교통법 제32조 (정차 및 주차의 금지)	<p>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는 차를 정차하거나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 또는 경찰공무원의 지시를 따르는 경우와 위험방지를 위하여 일시정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교차로·횡단보도·건널목이나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주차장법」에 따라 차도와 보도에 걸쳐서 설치된 노상주차장은 제외한다) 2. 교차로의 가장자리나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미터 이내인 곳 3. 안전지대가 설치된 도로에서는 그 안전지대의 사방으로부터 각각 10미터 이내인 곳 4. 버스여객자동차의 정류지(停留地)임을 표시하는 기둥이나 표지판 또는 선이 설치된 곳으로부터 10미터 이내인 곳. 다만, 버스여객자동차의 운전자가 그 버스여객자동차의 운행시간 중에 운행노선에 따르는 정류장에서 승객을 태우거나 내리기 위하여 차를 정차하거나 주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건물목의 가장자리 또는 횡단보도로부터 10미터 이내인 곳 6. 다음 각 목의 곳으로부터 5미터 이내인 곳 <o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소방기본법」 제10조에 따른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가 설치된 곳 나.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소방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 설치된 곳 7. 지방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곳

2. 주차금지 위반

근거법령	본 문
도로교통법 제33조 (주차금지의 장소)	<p>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 차를 주차해서는 아니 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터널 안 및 다리 위 2. 다음 각 목의 곳으로부터 5미터 이내인 곳 <o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도로공사를 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공사 구역의 양쪽 가장자리 나.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이 속한 건축물로 소방본부장의 요청에 의하여 지방경찰청장이 지정한 곳 3. 지방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곳

3. 정차 또는 주차의 방법 및 시간의 제한 위반

근거법령	본 문
<p>도로교통법 제34조 (정차 또는 주차의 방법 및 시간의 제한)</p>	<p>도로 또는 노상주차장에 정차하거나 주차하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차를 차도의 우측 가장자리에 정차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차 또는 주차의 방법·시간과 금지사항 등을 지켜야 한다.</p>
<p>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1조 (정차 또는 주차의 방법 등)</p>	<p>① 차의 운전자가 법 제34조에 따라 지켜야 하는 정차 또는 주차의 방법 및 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모든 차의 운전자는 도로에서 정차할 때에는 차도의 오른쪽 가장자리에 정차할 것. 다만, 차도와 보도의 구별이 없는 도로의 경우에는 도로의 오른쪽 가장자리로부터 중앙으로 50센티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한다. 2. 여객자동차의 운전자는 승객을 태우거나 내려주기 위하여 정류소 또는 이에 준하는 장소에서 정차하였을 때에는 승객이 타거나 내린 즉시 출발하여야 하며 뒤따르는 다른 차의 정차를 방해하지 아니할 것 3. 모든 차의 운전자는 도로에서 주차할 때에는 지방경찰청장이 정하는 주차의 장소·시간 및 방법에 따를 것 <p>② 모든 차의 운전자는 제1항에 따라 정차하거나 주차할 때에는 다른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안전표지 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지시에 따르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국가경찰공무원(의무경찰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나.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경찰공무원(이하 "자치경찰공무원"이라 한다) 다. 국가경찰공무원 또는 자치경찰공무원(이하 "경찰공무원"이라 한다)을 보조하는 제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고장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주차하는 경우 <p>③ 자동차의 운전자는 법 제34조의3에 따라 경사진 곳에 정차하거나 주차(도로 외의 경사진 곳에서 정차하거나 주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려는 경우 자동차의 주차제동장치를 작동한 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운전자가 운전석을 떠나지 아니하고 직접 제동장치를 작동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경사의 내리막 방향으로 바퀴에 고임목, 고임돌, 그 밖에 고무, 플라스틱 등 자동차의 미끄럼 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것을 설치할 것 2. 조향장치(操向裝置)를 도로의 가장자리(자동차에서 가까운 쪽을 말한다) 방향으로 돌려놓을 것 3. 그 밖에 제1호 또는 제2호에 준하는 방법으로 미끄럼 사고의 발생 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할 것